

유진자산운용의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주요 내용

2021년 5월 20일

유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사의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공개합니다.

I.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및 제외정보

차단정보	제외정보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본 정보에 대한 사항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그 내용을 판단하고 원칙적으로 정보교류를 차단합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정보로서, 미공개중요정보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거나 예외적으로 교류가 필요한 경우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상의 예외적 교류의 요건충족여부, 해당 정보를 수령하는 상대방, 정보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교류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1.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 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5.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 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1.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2.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정보 3.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

계열회사 등 제3자와의 정보 교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와 무관한 정보 등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의 교류 또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의 정보교류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회사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회사와 업무를 제휴한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제휴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감사, 인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회사가 금융투자업등 관련 업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그 밖에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정보제공으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
--------------------	---

II.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1.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문

- 사내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문: 회사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 및 투자자문업무를 포함, 이하 같음)
- 사외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문: 회사와 회사의 계열회사 및 판매회사
- 기타 회사에서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2.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정보의 종류

- 회사 고유재산 운용업무: 회사의 고유재산에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미공개중요정보
-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및 투자자문업무에 관한 정보, 미공개중요정보

III.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목록 지정 기준

회사가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준법감시인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제한 상품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거래주의 목록

- 1) 채권·채무자 등으로 참여 또는 관여하는 경우
- 2) 기타 매매거래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거래제한 목록

- 1)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 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 2) 그 밖에 회사가 매매거래 등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IV.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1.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 회사는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조건에 대한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거나 정보교류통제책임자의 사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해상충 및 법령위반 가능성을 해소하고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2)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 3)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4)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다만 세부지침 등에서 집합투자기구 유형별로 매매회전율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따른다.
- 5)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만 세부지침 등에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한도 기준 등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따른다.

■ 회사는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제85조 및 제9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또는 관계인수인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 등(자본시장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자본시장법 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 2)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3)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 4)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 5) 자신이 운용하는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기 위해 다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는 행위

2. 대응방안

회사는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에 따라 거래 중단, 고객에 해당 사실의 고지 등 이해상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사전 승인 및 사후 보고 절차를 통해 상시 점검
- 2) 사무공간 분리, 회의록 작성, 전산시스템 등 정보교류 차단 장치 설치 및 운영
- 3)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부문간 정보교류에 대한 부문별 책임자 지정 및 관리
- 4) 이해상충과 관련된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V.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이해상충 및 정보교류차단과 관련된 내부통제관리 절차를 강화하여 내부통제기준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투자자 이익 우선

- 1) 투자자의 이익은 회사,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한다.
- 2) 투자자의 이익은 상호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2. 이해상충의 관리

- 1) 회사는 다음의 관계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회사와 임직원과의 관계
 - 회사와 투자자와의 관계
 - 관계회사 등과 투자자와의 관계
 - 임직원과 투자자와의 관계
 - 특정투자자와 다른 투자자와의 관계
- 2)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회사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고객의 자산,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의 거래에 대해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곤란할 경우 매매 그 밖의 거래 불가

4) 회사는 관련 법규의 준수여부 및 이해상충방지 등의 효율적인 점검관리를 위하여 이해상충 발생이 가능한 상황에 대한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회사의 정보교류통제 체계

- 1) 정보교류통제 총괄 책임임원 및 조직 :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조직
- 2)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 책임자 : 각 운용본부 본부장 및 마케팅·경영관리본부장
- 3)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 : 대표이사 및 감사
- 4)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대상 부문과 비대상 부문 간의 업무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
- 5)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접근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사전승인을 받아 최소한의 범위로 제공하는 등의 예외적 교류원칙을 정의하고 후선업무목적의 예외적 교류 허용
- 6) 정보보교류차단의 기록 유지 및 정기적 점검, 임직원 교육 및 정보교류차단 내역공개 등